

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하였으나,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		주 소	발급기한	지참물	비고
	성명	생년월일				
1	이*연	1999. 11. 25.	청마로148번길 43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2	신*준	1999. 11. 17.	원당대로685번길 30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3	이*혜	1999. 11. 20.	원당대로628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4	김*혜	1999. 11. 01.	완정로45번길 3-1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5	서*원	1999. 11. 21.	완정로64번길 7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6	정*선	1999. 11. 02.	완정로64번길 7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7	진*민	1999. 11. 26.	완정로64번길 7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8	김*현	1999. 11. 26.	완정로65번안길 10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9	김*연	1999. 11. 24.	완정로65번안길 10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10	윤*찬	1999. 11. 25.	검단로540번길 59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11	김*엽	1999. 11. 12.	완정로64번길 23	2017. 11. 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
발급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3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☎ 032-560-3356)

2016년 11월 16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